Ⅱ 사적연금 현황과 문제점

공적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된다면 사적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본인이 기여하고 적립된 만큼 수령하는 사적연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연금 중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 중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계좌(개인형 IRP+연금저축)를 중심으로 사적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1. 사적연금 현황

가. 퇴직연금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근로자 퇴직 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퇴직금제도는 퇴직연금 재원을 사내에 적립하여 사업체 도산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퇴직금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가입자가 이직 등을 위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 퇴직금이 근로기간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적립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목돈으로 지급되어 은퇴 이후 충분한 퇴직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고령층이 스스로 자산을 운용하여 노후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 시 연소득의 8.3%를 근속연수만큼 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DC형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소득의 8.3% 이상을 매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고 근로자는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퇴직 시 노후소득원으로 수령하게 된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 모두 적립금을 사업체의 계좌가 아닌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퇴직 시 적립된 퇴직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겨져 은퇴 시까지 퇴직연금 적립금으

로써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세제혜택으로는 납입 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는 손금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기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 한다. 특히 은퇴 연령(55세) 이후 적립금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경감하여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판단에 따라 IRP에 은퇴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2023년 현재 900만 원까지는 적립금의 12%를 세액공제 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퇴직연금 장려 정책에 힘입어 퇴직연금은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다.[2] 퇴직연금은 2021년 현재 42.5만여 사업장에 도입되어 27.1%의 도입률을 기록하고 있고, 총 가입자는 683.7만 명에 달해 전체 대상자의 53.3%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적립금액은 295조 원으로 매년 10%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가입률, 적립금 그리고 성장률 등을 볼 때 퇴직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개인연금

3층의 개인연금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납입 시 세제혜택은 없지만 10년간 계약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연금은 「소득세법」에 의해 규율된다.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해 1년에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3] 적립된 자산이 운용되는 동안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과세하지 않은 소득세는 적립된 연금자산을 연금으로 수령 시 3~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그러나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하거나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적립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연금저축은 2021년 기준으로 연금저축 계좌 보유자는 689만 명이며, 이중 218만 명이 보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제공해야 함. 다만 일부 예외를 두어 퇴직금으로도 퇴직급여 제공이 가능함

3) 「소득세법」 제59조의3 등

험료를 납부였으며 연금저축계좌에는 총 160.1조 원이 적립되어 있다.

연금저축과 유사한 제도로 개인형 IRP를 들 수 있다. 동 제도와 연금저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형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소득세법」에서 연금계좌로 통칭하며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에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므로 개인은 이 둘을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형 IRP의 경우 2014년까지는 세제혜택 한도가 연금저축과 동일한 400만 원이었으나 2015년부터 개인형 IRP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이후 개인형 IRP 적립금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실례로 2020년 개인형 IRP 적립금은 34.4조 원이었으나 2021년 46.5조 원으로 1년 만에 12.1조 원,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2. 사적연금의 문제점

퇴직연금과 연금계좌(개인형 IRP+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을 노후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사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퇴직연금과 연금계좌가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이다.

가. 중도 인출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중도 인출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되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임대주택 마련, 본인 혹은 직계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요구하는 질병, 본인의 파산 및 개인회생 등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러한 예외적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 인출을 실행하는 가입자 숫자는 5.5만 명이고 금액은 1.9조 원에 달한다. 이중 주택 구입이 1조 2,659억 원으로 65.2%로 가장 많고, 주택 임차 명목으로 중도 인출된 금액은 4,555억으로 전체 중도 인출의 23.5%를 차지한다(통계청, 2022).

이러한 수치는 중도 인출 조건 중 요양이나 파산, 개인회생 등의 이유는 평생 여러 차례 일어나기 어렵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 한 뒤 다시 주택을 구입하면 생애 동안 몇 차례라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임대주택 마련 역시 동일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사실상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차례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 이직 시 해지

이직이나 퇴직 시 IRP로 입금된 적립금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이직 및 퇴직으로 적립금을 IRP로 이전한 가입자는 91.3만 명이고 그 금액은 17.6조 원에 달한다. 이중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11.7조 원에 달한다.

〈표 Ⅱ-1〉 IRP 이전금액 중 해지금액 및 해지율

(단위: 조 원, %)

연도	이전금액	해지금액	해지율
2015	10.7	9.5	88.8
2017	11.5	10.1	87.9
2019	13.9	11.2	80.9
2021	17.6	11.7	66.3

자료: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이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금 개시가 가능한 55세 미만자가 IRP를 해지한 경우는 인원 기준으로 99%, 금액 기준으로는 98.4%에 이른다.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이직 시 IRP로 이전된 다음 상당 부분이 은퇴 이후까지 보존되지 못하고 누수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퇴직급여를 인출 하지 않고, 은퇴 시까지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Ⅱ-2〉 IRP 해지 인원 및 금액

(단위: 명, %, 백만 원)

구분	인원 기준		금액 기준	
	인원	비중	금액	비중
합계	865,116	100.0	11,688,801	100.0
20세 미만	650	0.1	1,792	0.0
20~25세 미만	39,791	4.6	195,009	1.7
25~30세 미만	160,424	18.5	1,072,794	9.2
30~35세 미만	162,442	18.8	1,689,722	14.5
35~40세 미만	138,333	16.0	2,041,375	17.5
40~45세 미만	128,030	14.8	2,162,160	18.5
45~50세 미만	117,295	13.6	2,133,067	18.2
50~55세 미만	111,821	12.9	2,210,627	18.9
55~60세 미만	6,033	0.7	158,892	1.4
60~65세 미만	227	0.0	18,308	0.2
65세 이상	70	0.0	5,054	0.0

자료: 통계청, 2021년 퇴직연금 통계

다. 추가(연금계좌) 적립 미흡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고려했을 때 매년 연소득의 8.3%씩 적립되는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올릴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추가적인 연금자산을 적립해야 한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방법은 연금계좌(개인형 IRP+연금저축)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900만 원까지 12%[4]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또한 적립된 자산을 운용하는 동안에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3~5%의 저율로 분리과세 한다. 이러한 세제상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 연금자산을 적립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14%, 납입자의 평균 납입액은 308만 원 수준으로 낮다.

이를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납입자의 비율과 평균 납입액이 높다. 반면, 소득이 낮아 저축 여력이 낮은 계층의 경우 연금계좌 납입자 비율과 평균 납입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5%임

〈표 Ⅱ-3〉 근로자 소득수준별 연금계좌 가입률 및 가입자 평균 납입액 변화 추이

(단위: %, 만 원)

구분	전체		2,000 이하		2,000~4,000		4,000~6,000		6,000~8,000		8,000~10,000	
연도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2014	14.3	258.2	2.0	101.1	17.8	208.2	43.7	275.4	59.4	302.4	70.4	323.2
2015	14.1	271.0	1.7	69.6	16.3	195.7	42.7	271.5	58.6	316.7	70.0	363.7
2016	13.5	280.1	1.4	80.6	14.1	206.4	39.2	271.3	55.7	314.7	67.5	364.0
2017	13.9	279.1	1.5	74.5	13.6	198.5	37.7	268.4	54.5	321.0	66.3	369.8
2018	13.8	285.2	1.4	77.5	12.6	199.6	35.4	268.3	52.3	325.4	64.0	374.7
2019	13.8	289.4	1.5	79.6	12.1	199.7	33.9	270.6	50.8	329.6	62.3	381.6
2020	14.1	308.7	1.47	74.7	12.1	208.6	33.1	284.9	49.7	356.1	61.6	417.0

주: 소득액은 초과~이하로 구분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 정원석(2022)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근로기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으므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인 연금계좌를 통해 적절한 노후소득원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저축 여력이 낮고 과세표준이 0원인 과세 미달자가 많아 현재의 세액공제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연금계좌 납입 유인 요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표 Ⅱ-4〉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자 중 소득계층별 과세 미달자 비율

(단위: 만 원, %)

연도	전체	1,000 이하	1,000~2,000	2,000~4,000	4,000~6,000	6,000~8,000
2014	14.3	99.0	80.8	23.4	2.8	0.2
2015	8.7	88.0	63.1	14.9	1.5	0.1
2016	8.5	95.5	72.6	15.2	1.5	0.1
2017	7.6	91.8	66.1	14.0	1.3	0.1
2018	7.4	93.6	67.6	14.6	1.2	0.1
2019	7.3	94.4	67.2	14.3	1.0	0.1
2020	8.1	93.6	71.8	17.6	0.9	0.1

주: 소득액은 초과~이하로 구분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직접 산출함

라. 낮은 운용수익률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5년 연평균 수익률은 1.96%,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2.39%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은 1% 수준이다.

〈표 Ⅱ-5〉 제도 유형별 운용방식별 기간별 수익률 현황

(단위: %)

방법	구분	DB	DC	개인형 IRP	전체
전체	5년	1.67	2.37	2.36	1.96
	10년	2.22	2.73	2.49	2.39
원리금보장형	5년	1.64	1.50	1.52	1.59
	10년	2.18	2.35	1.93	2.19
실적배당형	5년	3.33	5.79	5.51	5.18
	10년	3.27	4.40	4.20	4.09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퇴직연금 통계

수익률을 운용방식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DB형의 5년과 10년 평균수익률은 1.67%와 2.22%, DC형은 2.37%와 2.73% 그리고 개인형 IRP의 경우에는 5년 평균수익률 2.36%, 10년 평균수익률 2.49%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운용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익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DC형 혹은 IRP의 경우 가입자가 본인 소유의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운용지시를 직접 내리므로 자산운용에 많은 신경을 쓰고 위험도와 수익률을 감안하여 자산운용 지시를 내릴 유인 요소가 충분하다. 반면, DB형의 경우 퇴직연금 담당자가(대리인) 자산운용 방식을 결정하므로 높은 수익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추종하는 투자를 결정할 유인 요소가 없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담당자는 수익률과 위험을 감안한 실적배당형 포트폴리오보다는 투자 원금이 보존되는 원리금보장형 투자방식을 선호할 유인 요소가 많다. DB형보다 DC형 혹은 개인형 IRP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은 이러한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자산운용의 이해(利害)가 일치하는 정도(Interest Alignment)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Ⅱ-1〉 제도별 기간별(5년, 10년) 연평균 수익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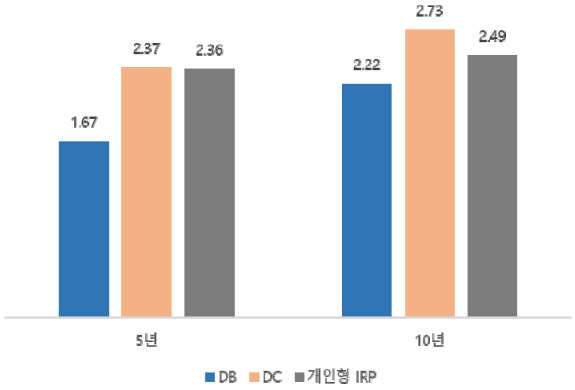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퇴직연금 통계

자산운용 지시자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제도별 적립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DB형의 경우 실적배당형 운용 비율이 4.8%이고 원리금보장형 운용 비율은 93.9%였다. 한편, DC형은 실적배당형 운용 비중이 20.9%, 개인형 IRP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통한 자산운용 비율이 34.3%에 달한다. 이는 DB형에서 앞서 언급한 대리인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개인형 IRP 가입자는 세제혜택 등에 따라 현재 소비를 줄이고 자발적으로 노후자금을 적립한 개인으로서 수익률에 매우 민감한 가입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개인형 IRP 가입자 그룹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Ⅱ-2〉 제도별 적립금 운용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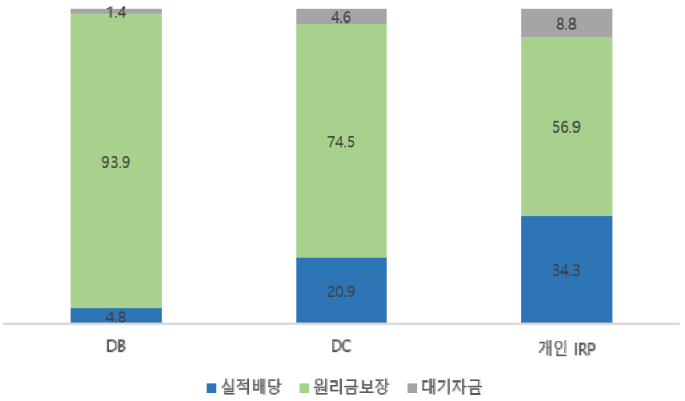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퇴직연금 통계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상품별 수익률의 경우 5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DB형의 경우 원리금보장형은 1.64%, 실적배당형은 3.33%였다. DC형의 경우에는 원리금보장형이 1.50%, 실적배당형은 5.79%, 개인형 IRP는 원리금보장형이 1.52%, 실적배당형은 5.51%의 수익률을 거두어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의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이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위해서 더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재무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변동성을 감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5) 10년 기준으로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은 DB형이 2.18%와 3.27%, DC형이 2.35%, 4.40% 그리고 IRP가 1.93%, 4.20%로 5년 수익률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음

〈그림 Ⅱ-3〉 투자상품별 기간별(5년, 10년) 연평균 수익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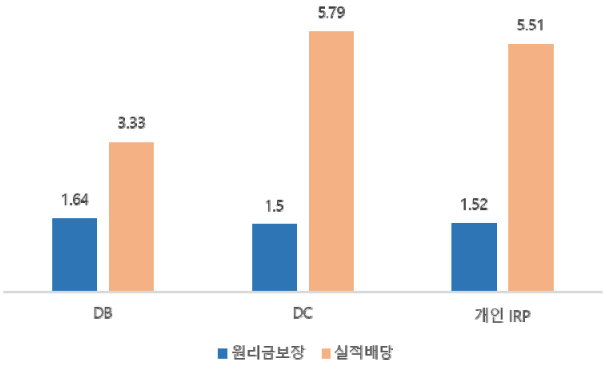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퇴직연금 통계

연금저축 역시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수익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연금저축 수익률은 3~4% 수준이었다. 이를 업권별로 나누어서 보면 금융투자 업권의 연금저축 펀드를 제외하면 1% 수준의 수익률에 불과했다. 다만, 펀드를 중심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활발하게 투자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수익률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퇴직연금에서 언급한 원리금보장형에 치중한 포트폴리오로 인한 낮은 수익률의 문제점이 연금저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Ⅱ-6〉 연금저축 업권별 수익률 현황

(단위: %)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신탁)	금융투자(펀드)	전체
2019	1.84	1.5	2.34	10.5	3.05
2020	1.77	1.65	1.72	17.25	4.18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4. 6), “연금저축 현황 분석”

마. 낮은 연금화 수령 비율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55세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연금을 개시한 397,270개 계좌 중 4.3%(16,984개 계좌)가 연금 형식으로 수령되었다. 나머지 95.7%(380,286개 계좌)는 일시금으로 수령되었다. 이를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 수령한 9.3조 원 중 34.3%에 해당하는 3.2조 원이 연금으로 지급되고, 연금 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8,858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15만 원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 적립금의 8.6%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Ⅱ-7〉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단위: 좌, %, 억 원)

구분	연금 수령		일시금 수령		합계	
	퇴직급여	비중	퇴직급여	비중	퇴직급여	비중
계좌 수(A)	16,984	4.3	380,286	95.7	397,270	100.0
금액(B)	32,028	34.3	61,398	65.7	93,426	100.0
계좌당 금액(B/A)	1.89	-	0.16	-	0.24	-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퇴직연금 통계

이는 적립금이 적은 가입자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월 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적립금이 많은 가입자는 연금 수령으로 인한 퇴직소득세 감면(30~40%)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을 유인 요소가 많아진다. 예를 들어, 20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2억 원인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 퇴직소득세액은 약 730만 원 이 된다.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730만 원을 일시금으로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30% 감면된 511만 원을 10년 동안 1년에 51.1만 원씩 나누어서 납부하면 된다.[6] 따라서 적립금 수준이 높은 가입자는 연금화 수령(Annuitization)에 대한 유인 요소가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6) 동 계산은 예를 들기 위해 금액과 근무 기간만을 고려하여 단순하게 퇴직소득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다른 요건에 따라 계산된 세액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음

3. 소결

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 급여가 지금보다 적어진다면 부족해진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사적연금은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은퇴자의 노후소득원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중도 인출 및 이직으로 인한 인출 등으로 퇴직연금 자산이 지속적으로 적립되지 못하는 부분을 들 수 있다. 둘째, 낮은 수익률로 인한 적립금이 적절히 증식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